DKL
디케이엘파트너스

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통한 내 회사 지키기

2023.11.9. 하종석 변호사

CONTENTS

I. 기존 적대적 M&A 방어전략

II. 복수의결권제도란?

III. 발행요건과 절차

IV. 발행대상

V. 복수의결권 숫자, 주금납입방법

VI. 보통주식 전환

VII. 의결권 제한

VIII. 발행 보고

IX. 특례

X. 형사처벌 및 과태료

XI. 준비해야할 사항

기존 적대적 M&A 방어전략

지분확보를 통한 방어수단

- 상호협력주주의 확보
- 그린메일인수
- 불가침협정
- 자사주의 취득 및 매각
- 제3자 배정 유상증자
- 우호세력에게 전환증권/신주인수권부사채/교환사채 발행
- 백기사초빙
- 대규모 유상증자의 추진

기존 적대적 M&A 방어전략

정관 변경을 통한 방어수단

- 신주의 제3자배정 규정의 정비
- 이사의 시차임기제
- 이사의 자격제한
- 이사선임 요건의 강화
- 특별다수결의제도 도입
- 황금낙하산
- 의결권대리행사 제한규정
- 집중투표제 채택 배제

기존 적대적 M&A 방어전략

그 밖의 방어수단

- 주요자산의 매각
- 신규투자의 결정
- 공격자의 위규사항에 대한 고발 및 감독기관 경고
- 독약처방(Poison Pill)

복수의결권제도란?

-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
- 미국, 영국, 프랑스, 덴마크, 아일랜드, 헝가리 등 국가에서 먼저 도입
- 중국-2019년 도입, 인도-2019년 도입

복수의결권제도란?

페이스북

마크 저커버그

1주당 10개의 의결권

쿠팡

김범석 의장

1주당 29개의 의결권

미국의 복수의결권 제도

- 각 주의 법률인 회사법이 규율
- 대다수 미국의 주 회사법전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임의규정으로
- 주주간의 충실의무와 충돌

-구글: 무의결권 주식 발행 후 배당으로 지급 케이스

- 1992년 5%→1997년 6.4% →2015년 14%
- TPV(조건부 복수 의결권 인정 제도)를 통해 안정적 가족기업 운영
- 맨체스터 유나이티드/알리바바 등이 복수의결권제도를 위해 뉴욕증권거래소 선택

발행 요건과 절차

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1항
동법 시행령 제11조의8

요건

-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(창업주, 그 친척 등)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것
- 창업 이후 **100억** 이상 투자, 마지막 투자 금액 **50억** 이상
- 벤처기업의 최대주주인 창업자가 위 투자를 받음으로써 **30% 미만**으로 지분비율이 떨어지게 될 것

발행 요건과 절차

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2항

정관기재사항

-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
-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
-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
-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
-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
-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
-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

발행 요건과 절차

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3항, 제4항

주주총회

-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**성명**
-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**수량**
-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**금액**
- 복수의결권주식의 **납입**에 관한 사항
-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이상의 **가중특별결의** 필요

발행 대상

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5항, 제6항

-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성립 당시 **정관에 기재된 발기인**
- 주총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**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등기이사**일 것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
- 회사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 투자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**30%이상**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.
- 단, 위 각각 요건을 다 갖춘 자가 **2인 이상**일 경우에는 2인이 합산한 지분이 **50% 이상**인 경우에는 각각을 창업주로 봄.

복수의결권 숫자, 주금납입방법

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7항, 제8항
시행령 제11조의8 제4항

- 1개 초과 **10개 이하** 범위
- **총주주의 동의로 결의**한 경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보통주** 납입 할 수 있음

  1. 납입하고자 하는 보통주식의 수량, 납입기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**납입의뢰서**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제공할 것
  2. 제1호에 따른 납입기일에 주권의 인도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

- 보통주 납입 시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

보통주식 전환

벤처기업법 제16조의12
시행령 제11조의9

- 존속기간 **만료**된 경우 : 만료일 다음 날
-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**상속** 또는 **양도**한 경우 : **상속일** 또는 **양도일**
- 창업주가 이사 직 **상실**한 경우 : **상실일**
- 회사가 **상장**한 경우 : 상장된 날로부터 **3년이 지난 날**
-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또는 지정 후 제외 사실 또는 국내계열회사 편입 또는 편입 대상임에도 제외 통지를 받는 경우 : **통지일**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: 그 **발행일**에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
-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**2주 이내**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주주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

의결권 제한

벤처기업법 제16조의13

-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**정관 변경** 사항
- 이사 **보수**, 이사의 회사에 대한 **책임 감면**에 관한 사항
- **감사** 또는 감사위원회원의 **선임 및 해임**에 관한 사항
- **자본금 감소 결의** 또는 **이익배당**에 관한 사항
- **해산** 결의에 관한 사항

위 경우, **1주당 1개**의 의결권

발행보고

벤처기업법 제16조의14
시행령 제11조의10

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**보고**

  1. 정관으로 정한 사항
  2.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
  3.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
  4.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

- 변경 보고시 보고서에 각호 서류 첨부

  1. 정관
  2. 주주총회 의사록
  3. 주주명부

- 1개월 동안 위 사항을 **본점 및 지점**에 **비치**

특례

벤처기업법 제16조의15

- 복수의결권발행 당시에 벤처기업이면 되고, 발행 이후에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효력은 **유효**

-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주식수가 아니라 **의결권수를 기준**

형사처벌 및 과태료

벤처기업법 제16조의13
시행령 제11조의11

-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권조사 가능
- 복수의결권주식을 **허위** 또는 **부정**한 방법으로 발행한 자는 **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**
- 복수의결권발행주식의 **보고** 또는 **발행내역 비치** 및 **공시 의무**를 위반한 경우에는 **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

복수의결권 제도 문제점

- 기 보유 주식으로 납입을 할 시, 총주주 동의 필요, 납입 시 **양도소득세** 문제
- 창업주와 투자자 간 투자계약서/주주간 계약서와의 **충돌** 문제
- 요건의 까다로움

  1) 투자금 **유치 기준**

  2) 정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**실질적 창업주**
- **사전 동의권** 문제

DKL 준비사항

- **정관 작성**부터
- **신주발행 등기**까지
- **복수의결권주식** 관련 **모든 절차**
- FULL-SERVICE 제공

DKL PARTNERS

널리 혁신기업을 이롭게 한다

하 종 석 변호사

010 . 5003 . 3706
jongseok.ha@dkl.partners

DKL PARTNERS

https://dkl.partners

T. 02-6952-2615 D. 02-6952-1845 F. 02-6918-0832
06232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, 17층 1704호(역삼동, 메리츠타워)